

대 법 원

제 1 부

판 결

사 건 2020다217779 회사에관한소송
원고, 피상고인 홍영균
오산시 오산로240번길 31-1, 601호 (원동)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미르(담당변호사 서현, 이미예리)
피고,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
서울 구로구 중앙로 23, 205호 (고척동, 동선상가)
대표자 회장 지광석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(담당변호사 한택근)
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. 1. 16. 선고 2019나2016558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

에 관한 주장은 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20. 6. 4.

재판장	대법관	김선수	<u>김선수</u>	
	대법관	권순일	<u>권순일</u>	
주심	대법관	이기택	<u>이기택</u>	
	대법관	박정화	<u>박정화</u>	

정본입니다.

2020. 6. 4.

대법원

법원사무관 오사롱



※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,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, 문서의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